

## 충청지방우정청 고시 제 2017-5호

충청지방우정청 고시 제2017-1호(점심시간 휴무에 따른 우체국 금융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사항)를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.

2017년 8월 2일

## 충 청 지 방 우 정 청 장

### 점심시간 휴무에 따른 우체국 금융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사항 폐지

#### □ 폐지 이유

「점심시간 휴무에 따른 우체국 금융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사항」은 현재 충청지방우정청 고시 제2017-4호(우체국 금융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사항)에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해당 고시를 폐지합니다.

## 부 칙

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